

## -2024학년도 제1학기-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신청 안내

안녕하세요.

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의 2(개인별 교육지원계획),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(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)에 따라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
이에,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대상 : 신입학.복학 예정이거나, 재학중인 장애학생 중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원하는 학생
2. 수립내용 :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(편의제공 등) 관련 내용 및 장애학생의 특별한 교육지원 요구에 관한 지원계획
3. 수립절차 및 일정

구분	내용	일정	
1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장애학생]</p> <p>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관련 수요조사서 등록</p>	<p>-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신청서 [붙임2-서식 1],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[붙임 2-서식 2] 등록</p> <p>※ 신청경로</p> <p>- 신입생 : 이메일(<a href="mailto:doumi@cnu.ac.kr">doumi@cnu.ac.kr</a>)</p> <p>- 재학생 : 충남대학교 포털 (<a href="https://portal.cnu.ac.kr/login.jsp">https://portal.cnu.ac.kr/login.jsp</a>)-[프로그램] 메뉴</p> <p>※ 프로그램명 : 2024학년도 제1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신청</p>	<p>~</p> <p>2024. 2. 23.(금)</p>
2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센터]</p> <p>개인별 교육 지원계획 고지 (통지)</p>	<p>- 장애학생에게 개인별 교육지원계획고지</p> <p>- (장애학생 요청 시) 교육지원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.학부.대학원의 장에게 통보</p>	<p>2024. 3. 20.(수)</p> <p>~</p> <p>2024. 3. 22.(금)</p>
3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장애학생, 센터]</p> <p>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실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</p>	<p>-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실행에 대해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</p>	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4. 신청방법 : ① **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신청서 [붙임2-서식 1]**, ② **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[붙임 2-서식 2] 등록**

[신청경로]

- 신입생 : 이메일([doumi@cnu.ac.kr](mailto:doumi@cnu.ac.kr))
- 재학생 : 충남대학교 포털(<https://portal.cnu.ac.kr/login.jsp>)-[프로그램] 메뉴
- ※ 프로그램명 : 2024학년도 제1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신청

5. 문의 : 장애학생지원센터(042-821-5057, [doumi@cnu.ac.kr](mailto:doumi@cnu.ac.kr), 카카오톡 채팅 바로가기 : [http://pf.kakao.com/\\_xfMIZC/chat](http://pf.kakao.com/_xfMIZC/chat))

6. 자주하는 질문

**< 질문모음 >**

Q1. 수요조사서 제출,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신청은 등록된 장애학생이라면 필수로 해야하나요?

☞ **아니오.**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신청을 원하는 학생만 신청하면 됩니다.

Q2.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서가 없으면 개별 서비스(예 : 우선수강신청 등)를 이용할 수 없나요?

☞ **아니오.**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과 상관없이 개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Q3.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서가 학과에 통보되나요?

☞ **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.** 본인에게만 통보를 신청하면 본인에게만 통보되며, 장애학생의 요청 시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, 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애계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.

Q4. 수요조사 시 어떤 항목을 조사하고,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☞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(편의제공 등)에 따라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,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, 취학편의 지원, 정보접근 지원 등 **학교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**하게 됩니다.

Q5.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하나요?

☞ 센터에서는 수요조사 후, 수요조사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(학습권보장위원회)에 보고하고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게 됩니다. **수요조사부터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까지 한달 이상 걸리는 과정이므로, 정해진 기한 내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## [참고사항] 관련 법 조항

### ❖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의 2(개인별 교육지원계획)

-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①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❖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2(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)

- ①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1. 장애유형 및 정도
  2.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
- ② 장애학생지원센터(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)의 장은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·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.